

의안
번호

575

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03. 20.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575호
- 다. 제출일자 : 2026. 03. 03.
- 라. 회부일자 : 2026. 03. 10.

2. 제안이유

- 포상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연차와 관계없이 공적의 실질적 내용과 성과 중심의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, 포상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포상의 공정성·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포상 심사기준 조문 명확화(안 제18조제2항)

나. 포상 심사기준의 근속연수 제한 조항 삭제(안 제18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6. 01. 29. ~ 2026. 02. 18.

○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공무원 포상 제도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근속연수 중심의 형식적인 포상 제한을 완화하고, 공적의 실질적인 내용과 성과 중심으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(1) 심사기준 문구 명확화(안 제18조제2항)

- 포상 심사기준 중 “공적”을 “유공 공무원의 공적”으로 구체화하여 심사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.

(2) 연차·근무기간 제한 삭제(안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6호 삭제)

- 현행 조례상 서울시 근무기간 3년 이상 및 성북구 근무기간 1년 이상 등 일정 근속연수 및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단기간 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음.
- 이에 해당 요건을 삭제하여 공적의 실질적 내용과 성과 중심으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.

〈안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6호 개정 전·후 비교〉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)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18조(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)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서울	〈삭 제〉

시 근속 3년 미만, 성북구 근속 1년 미만인 사람	
6. 현부서 근무 6개월 미경과자	<삭 제>

(3) 포상 제외 사유 문구 정비 및 신설(안 제18조제3항제8호 신설)

- 포상 제한 규정에 “구청장이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자”를 신설하여 포상 운영 시 표창계획과의 연계를 명시함.

<안 제8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개정 전·후 비교>

현 행	개 정 안
7. 그 밖에 공,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포상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	7. <u>공,사생활</u> ----- ----- ----- -----
<신 설>	8.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자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공무원 포상 제도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근속연수 중심의 형식적인 기준을 완화하고 공적의 실질적 내용과 성과 중심으로 포상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, 공직사회 내 동기부여와 사기 진작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특히 포상대상자 제외 기준이 되는 근속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, 서울시 및 타 자치구가 조례상 별도의 근속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정책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.
- 다만 “구청장이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자” 규정은 적용 범위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표창 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